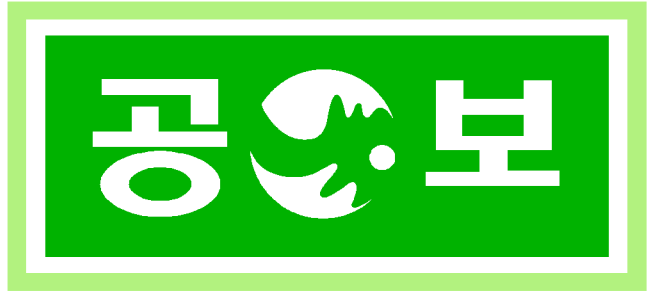


울산광역시북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| | |
|--------|---------|
| 공 람 | 기 관 의 장 |
| | |



제 986 호 2015. 12. 24. (목)

고 시
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5-264호[2016년도 일반·특별회계 세입·세출예산 고시] 2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5-269호[도로명주소 고시] 4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5-270호[도로명주소 폐지 고시] 6

공 고
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5-1116호[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부과·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안] 7

| | |
|----------------|---|
| 안 내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북구 전자공보는 매주 월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전주 금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☎ 북구 홈페이지(www.bukgu.ulsan.kr)→행정정보→알림마당→북구공보 |
|----------------|---|

| |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|--|--|--|--|--|--|--|--|
| 회 람 |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|--|--|--|--|--|--|--|--|

발행: 울산광역시북구 편집: 기획홍보실(☎241-7125 행정7125)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 2015-264 호

2016년도 일반·특별회계 세입·세출예산 고시

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얻은 2016년도 일반·특별회계 세입·세출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5. 12. 21.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의회 의결일자 : 2015. 12. 16.

2016년도 일반·특별회계 세입·세출 예산내역

(단위 : 천원)

| 구 분 | 예 산 액 | | 전년도예산액 | | 비교증감 |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|
| | 예 산 액 | 구성비 | 전년도예산액 | 구성비 | 비교증감 | 증감률 |
| 총 계 | 246,550,411 | 100.00% | 223,755,501 | 100.00% | 22,794,910 | 10.19% |
| 일반회계 | 245,233,114 | 99.47% | 222,540,318 | 99.46% | 22,692,796 | 10.20% |
| 특별회계 | 1,317,297 | 0.53% | 1,215,183 | 0.54% | 102,114 | 8.40% |
| 기타특별회계 | 1,317,297 | 0.53% | 1,215,183 | 0.54% | 102,114 | 8.40% |
|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| 145,432 | 0.06% | 146,021 | 0.07% | △589 | △0.40% |
|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| 38,800 | 0.02% | 0 | 0.00% | 38,800 | 순증 |
| 기반시설특별회계 | 10,483 | 0.00% | 10,303 | 0.00% | 180 | 1.75% |
| 주차장특별회계 | 1,122,582 | 0.46% | 1,058,859 | 0.47% | 63,723 | 6.02% |

□ 일반회계 세입내역

(단위 : 천원)

| 장·관 | 예 산 액 | | 전년도예산액 | | 비 교 증 감 |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|
| | | 구성비 | | 구성비 | 증감률 | |
| 총 계 | 245,233,114 | 100.00 % | 222,540,318 | 100.00 % | 22,692,796 | 10.20% |
| 100 지방세수입 | 53,370,000 | 21.76 % | 49,920,000 | 22.43 % | 3,450,000 | 6.91% |
| 110 지방세 | 53,370,000 | 21.76 % | 49,920,000 | 22.43 % | 3,450,000 | 6.91% |
| 200 세외수입 | 17,384,949 | 7.09 % | 16,151,553 | 7.26 % | 1,233,396 | 7.64% |
| 210 경상적세외수입 | 15,688,349 | 6.40 % | 15,155,064 | 6.81 % | 533,285 | 3.52% |
| 220 임시적세외수입 | 1,696,600 | 0.69 % | 996,489 | 0.45 % | 700,111 | 70.26% |
| 300 지방교부세 | 3,221,000 | 1.31 % | 3,221,000 | 1.45 % | 0 | 0.00% |
| 310 지방교부세 | 3,221,000 | 1.31 % | 3,221,000 | 1.45 % | 0 | 0.00% |
| 400 조정교부금등 | 38,190,607 | 15.57 % | 32,085,240 | 14.42 % | 6,105,367 | 19.03% |
| 410 자치구조조정교부금등 | 38,190,607 | 15.57 % | 32,085,240 | 14.42 % | 6,105,367 | 19.03% |
| 500 보조금 | 121,445,710 | 49.52 % | 109,586,327 | 49.24 % | 11,859,383 | 10.82% |
| 510 국고보조금등 | 77,154,786 | 31.46 % | 68,160,937 | 30.63 % | 8,993,849 | 13.20% |
| 520 시·도비보조금등 | 44,290,924 | 18.06 % | 41,425,390 | 18.61 % | 2,865,534 | 6.92% |
|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| 11,620,848 | 4.74 % | 11,576,198 | 5.20 % | 44,650 | 0.39% |
| 710 보전수입등 | 11,200,000 | 4.57 % | 11,200,000 | 5.03 % | 0 | 0.00% |
| 720 내부거래 | 420,848 | 0.17 % | 376,198 | 0.17 % | 44,650 | 11.87% |

□ 일반회계 세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| 구 분 | 예 산 액 | | 전년도예산액 | | 비교증감 |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|
| | | 구성비 | | 구성비 | 증감률 | |
| 총 계 | 245,233,114 | 100.00% | 222,540,318 | 100.00% | 22,692,796 | 10.20% |
| 010 일반공공행정 | 15,672,648 | 6.39% | 14,179,430 | 6.37% | 1,493,218 | 10.53% |
| 020 공공질서및안전 | 1,666,204 | 0.68% | 1,249,476 | 0.56% | 416,728 | 33.35% |
| 050 교육 | 600,570 | 0.24% | 572,170 | 0.26% | 28,400 | 4.96% |
| 060 문화및관광 | 15,992,864 | 6.52% | 15,504,044 | 6.97% | 488,820 | 3.15% |
| 070 환경보호 | 8,271,470 | 3.37% | 7,744,747 | 3.48% | 526,723 | 6.80% |
| 080 사회복지 | 109,372,093 | 44.60% | 103,753,883 | 46.62% | 5,618,210 | 5.41% |
| 090 보건 | 7,611,761 | 3.10% | 5,521,386 | 2.48% | 2,090,375 | 37.86% |
| 100 농림해양수산 | 15,928,476 | 6.50% | 14,697,699 | 6.60% | 1,230,777 | 8.37% |
| 110 산업·중소기업 | 947,637 | 0.39% | 772,309 | 0.35% | 175,328 | 22.70% |
| 120 수송및교통 | 7,848,233 | 3.20% | 3,355,532 | 1.51% | 4,492,701 | 133.89% |
| 140 국토및지역개발 | 13,462,478 | 5.49% | 9,803,472 | 4.41% | 3,659,006 | 37.32% |
| 160 예비비 | 3,230,969 | 1.32% | 2,770,615 | 1.24% | 460,354 | 16.62% |
| 900 기타 | 44,627,711 | 18.20% | 42,615,555 | 19.15% | 2,012,156 | 4.72% |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5 - 269호

도로명주소 고시

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5년 12월 24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: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20길 6(진장동)의 15건

| 종전주소 | 도로명주소 | 도로명 고시일 | 도로명 부여사유 |
|-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---|
| (별지참조) | | | |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(☎052-241-7583,7585)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(www.bukgu.go.kr)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5. 12. 24.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

| 순번 | 종전주소 | 도로명주소 | 도로명주소 고시일 | 도로명부여사유 | 도로명 고시일 | 비고 |
|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| 울산광역시 북구 신전동 496-2, 496-3, 496-10 | 울산광역시 북구 신전동 496-2, 496-3, 496-10 | 2004-12-27 | 옛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이름으로 울산시 민이민누구나 친숙한 이름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 | 2004-12-27 | |
| 2 | 울산광역시 북구 해동동 571-5 | 울산광역시 북구 송내로 17(해동동) | 2004-01-05 | 사람이 사는 터전을 관하는 지역이며 해동지 역의 대표적 인 옛지명 이라도 명을 부여하였다. | 2004-01-05 | 지번조정 571-1→571-5 |
| 3 |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349-1, 350, 350-1, 350-2, 351 | 울산광역시 북구 수백길 23(호계동) | 2004-08-09 | 예전지명인 수백골에 위치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 | 2004-08-09 | 지번조정 349-1과 350-1 350 |
| 4 | 울산광역시 북구 신전동 496-2, 496-3, 496-10 | 울산광역시 북구 신전동 496-2, 496-3, 496-10 | 2004-12-27 | 옛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명칭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 | 2004-12-27 | |
| 5 | 울산광역시 북구 신전동 496-2, 496-3, 496-10 | 울산광역시 북구 신전동 496-2, 496-3, 496-10 | 2004-08-09 | 기존지명인 울산리(舊)를 유지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 | 2004-08-09 | 지번추가 |
| 6 | 울산광역시 북구 중앙동 749-5, 749-9 | 울산광역시 북구 중앙동 749-5, 749-9 | 2009-06-18 | 울산의 산업을 활성화시키자는 취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 | 2009-06-18 | 지번추가 |
| 7 | 울산광역시 북구 신전동 411-1, 411-5 | 울산광역시 북구 신전동 411-1, 411-5 | 2009-06-18 | 울산의 산업을 활성화시키자는 취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 | 2009-06-18 | 지번추가 |
| 8 | 울산광역시 북구 호문동 1031 | 울산광역시 북구 호문동 1031 | 2013-12-30 | 법정동명칭사용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| 2013-12-30 | 지번조정 185→1031 |
| 9 |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252-19 |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8길 31(호계동) | 2009-08-20 | 기존의 길명인 주성명사이므로 도로명사용으로 부적합하고 동대로에 붙이기하므로 영림번호병식에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 | 2009-08-20 | |
| 10 |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252-10 |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8길 31-1(호계동) | 2009-08-20 | 기존의 길명인 주성명사이므로 도로명사용으로 부적합하고 동대로에 붙이기하므로 영림번호병식에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 | 2009-08-20 | |
| 11 | 울산광역시 북구 달전동 482 | 울산광역시 북구 달전동 482 | 2008-02-29 | 옛날민속관이었던곳이라 하는 지역특성에따라 주민의 편의에도 명을 부여하였다. | 2008-02-29 | |
| 12 | 울산광역시 북구 신전동 449-2 | 울산광역시 북구 신전동 449-2 | 2009-06-18 | 울산의 산업을 활성화시키자는 취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 | 2009-06-18 | |
| 13 |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13-2 |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13-2 | 2004-01-05 | 승정서수지를 거는 서수길이라하여 명칭을 부여하였다. | 2004-01-05 | |
| 14 |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252-17 |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19길 2(호계동) | 2009-08-20 | 기존의 길명인 주성명사이므로 도로명사용으로 부적합하고 동대로에 붙이기므로 영림번호병식에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 | 2009-08-20 | |
| 15 | 울산광역시 북구 달전동 892-144 | 울산광역시 북구 아랫마을길 2(달전동) | 2004-08-09 | 예전부터 아랫마을이라 부르는 것에서도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 | 2004-08-09 | |
| 16 |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250 |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250 | 2004-08-09 | 기존지명인 마을인 매곡동에 위치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 | 2004-08-09 | |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5 - 270호

도로명주소 폐지 고시

우리구 건물의 멸실 등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5년 12월 24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:

| 도로명주소 | 도로명주소 폐지일 | 폐지 사유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|
|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본길 47(매곡동) | 2015. 12. 24 | 건축물 멸실 |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직과 (☎052-241-7583,7585)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(www.bukgu.go.kr)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5. 12. 24.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.

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2015 - 1116호

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부과·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울산광역시북구 구세 기본조례 부과·징수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15. 12. 24.

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

1. 개정이유

개정된 「지방세기본법」 및 「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」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
 - 【현행】 지방세 체납액 3천만원 이상
 - 【개정】 지방세 체납액 1천만원 이상

3. 의견제출

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북구청장(참조: 세무과, 전화 241-7531, 팩스 241-7509)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기타 참고사항

4. 참고사항

개정조례안과 신규조문대비표는 우리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,
세무과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.

울산광역시 복구 구세 기본조례 부과·징수규칙 제 호

울산광역시 복구 구세 기본조례 부과·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(안)

울산광역시 복구 구세 기본조례 부과·징수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6조제1항중 중 “3천만원”을 “1천만원”으로 한다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기본조례 부과·징수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기본조례 시행 전 접수된 구세 기본조례 부과·징수규칙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